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

판 결

사 건 2017가단53618 추심금

원 고 [redacted]농업협동조합

피 고 [redacted]군

변 론 종 결 2017. 9. 26.

판 결 선 고 2017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6,128,848원 및 그 중 72,538,230원에 대하여 2017. 8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[redacted]지방법원은 2017. 4. 5. A이 원고에게 대여금 340,227,778원 및 그 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3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6. 6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(2016가단35513호 사건), 위 판결은 2017. 5. 27. 확정되었다.

나. [redacted]지방법원은 2016. 8. 9. B이 원고에게 대여금 518,234,270원 및 그 중 488,000,000원에 대하여 2016. 6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(2016차4916호 사건), 위 결정은 2016. 12. 9. 확정되었다.

다. C은 A의 배우자이자 B의 어머니이다. 그녀는 D종중의 총무였는데, 동 종중 소유의 [redacted] [redacted]군 E, F, G, H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자('I종중'이라고 기재됨) 스스로 위와 같은 명칭의 종중을 새로 설립하여 그 회장으로서 2014. 11. 12. 위 각 토지 중 E, F, G에 관하여는 A 명의로, H 토지에 관하여는 B 앞으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라. 그에 따라 A은 2014. 11. 12. 피고에게 합계 27,400,000원의 지방세(= 취득세 24,000,000원 + 지방교육세 2,000,000원 + 농어촌특별세 1,400,000원)를 납부하였고, B은 2014. 3. 14. 피고에게 합계 45,138,230원의 지방세(= 취득세 39,250,640원 + 지방교육세 3,925,060원 + 농어촌특별세 1,962,530원)를 납부하였다.

마. A과 B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5. 11. 선고 2015가합167 판결을 통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, 2016. 12. 26. 각 말소되었다.

바. 원고는 [redacted]지방법원 2017타채3608 및 2017타채3020 사건에서 A,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세 환급채권에 대한 각 압류·추심명령을 받았고, 위 각 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류 · 추심명령은 2017. 3. 22.과 2017. 6. 26.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(인정근거)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A과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, 이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도 피고에 대해 지방세 환급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

A과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방세 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이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지방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방세 환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.

3. 판단

가. A · B의 취득세 납부가 무효인지 여부

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·수익·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,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도 당연히 성립하고, 그 이후 그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경우 또는 그 계약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착오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(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),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조세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,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
앞서 본 것과 같이 A과 B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'I종중'과 A · B 사이의 매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므로,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들의 취득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, 그에 따라 이들의 취득세 납부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
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경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A · B은 피고를 상대로 지방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고, 피고는 위 환급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환급금액

앞서 본 것과 같이 A은 27,400,000원, B은 45,138,230원의 지방세를 각 피고에게 납부하였다. 그리고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지방세환급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[1]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, 이를 계산하면 A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1,174,672원[= 27,400,000원 × 1.6% × (2014. 11. 13. 부터 2017. 7. 18.까지의 기간 / 365일)]이고, B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2,415,946원[= 45,138,230원 × 1.6% × (2014. 3. 15.부터 2017. 7. 18.까지의 기간 / 365일)]이다.

1)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3조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,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각 부칙에 의하면,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2014. 3. 14.부터 2015. 3. 5.까지의 기간분이 연 1천분의 25, 그 다음날부터 2016. 3. 6.까지의 기간분이 연 1천분의 18,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분이 연 1천분의 16이지만, 원고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연 1천분의 16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, 이는 위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, 원고가 구하는 이율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로 한다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76,128,848원(= 27,400,000원 + 1,174,672원 + 45,138,230원 + 2,415,946원) 및 그 중 환급금 72,538,230원(= 27,400,000원 + 45,138,230원)에 대하여 2017. 7. 19.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. 8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임성철